

(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-참조1)

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발의년월일 : 2006. 5.

의안번호	1652
------	------

발 의 자 전이만 의원 등 10인

□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운영에 따른 2005. 8. 4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6. 2. 8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바
- 월정수당 지급기준 범위를 결정하는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범위 금액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제명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개정
- 안 제1조(목적)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개정
- 안 제3조(회기수당 지급)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,
“월정수당은 월 2,066,000원으로 하고, 지급일은 성남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”하는 것으로 개정

☐ 개정조례안 : 별 첨

☐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☐ 관제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32조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

성남시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한다.

제1조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월정수당 지급)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,066,000원으로
하고, 성남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5조 제1항중 “현지교통비”를 “일비”로 한다

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및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
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
200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(제명)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<u>회기수당</u>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<u>회기수당</u>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회기수당 지급) ① <u>회기수당은 회기 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(위원회 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</u> ② 제1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,000원 으로 하고,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 제5조(여비의 종류)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, 선박, 항공, 자동차), <u>현지교통비</u>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한다.	(제명)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<u>월정수당</u>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월정수당 ----- ----- -----. 제3조(월정수당 지급)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2,066,000원으로 하고, 성남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 제5조(여비의 종류) ①----- ----- ----- 일비, ----- -----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6조(여비지급의 기준) ①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의장·부의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, 의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로 준용한다.</u> <u>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외의 의원 여비지급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공무원여비지급의 예에 따른다.</u>	<u>제6조(여비지급의 기준) ①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및 별표 2의 제 2호를 준용한다.</u> <u>제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.</u>